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7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시균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, 수의매각 기준 명확화를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항 삭제(안 제26조, 제27조, 제32조제1항)
 -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⇒ 삭제
 -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 ⇒ 삭제
 -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⇒ 삭제
- 수의매각 기준 조항의 모호한 표현 수정(안 제40조제2호)
 -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한 경우

⇒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,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한 경우 ※ 쉽표(,) 추가

○ **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명확화(안 제40조제4호)**

-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·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

⇒ 2012년 12월 31일(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·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사항 반영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,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서 이미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기준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또한, 조문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항에 쉽표(,)를 추가 하여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, 조례와 행정규칙의 조문 표현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.
-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40조제2호 중 “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”를 “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2012년 12월 31일”을 “2012년 12월 31일(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6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</u> <u>영 제9조제4호, 제23조, 제29조</u> <u>제1항제7호, 제30조, 제32조제3</u> <u>항, 제35조, 제38조제1항제25호,</u> <u>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</u> <u>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</u> <u>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을 준용</u> <u>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27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</u> <u>· 매각 대상 등) 제26조에 따른</u> <u>외국인투자기업 또는 「외국인</u> <u>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7호</u> <u>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</u> <u>설 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</u> <u>업 등”이라 한다)에 대부· 매</u> <u>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</u> <u>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<u>법률」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</u> <u>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</u> <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</u> <u>은 공유재산</u></p> <p>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<u>법률」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</u></p>	<p><삭 제></p>

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
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
의 공유재산

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
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
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
된 지역의 공유재산

4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
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
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

5.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
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
내의 공유재산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
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
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공유재산
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
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
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
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
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
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
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 등”
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
호와 같다.
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
면) ① <삭 제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

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
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
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
사업

나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
천만달러 이상인 사업

다.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
명 이상인 사업

라.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
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
서 국내부품 및 원·부자
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
인 사업

마.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
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
수출하는 사업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
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
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
하는 경우

사.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
하는 기존 사업으로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
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
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
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.

가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
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
미만인 사업

나.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
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
업

다.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
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
서 국내부품 및 원·부자
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
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
업

라.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
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
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
하는 사업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
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
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
하는 경우

바.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
하는 기존 사업으로서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
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
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
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.

가.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
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
미만인 사업

나.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
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
업

다.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
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
서 국내부품 및 원·부자
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
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
업

라.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
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
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
사업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
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

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
전하는 경우

바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
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
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
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

사.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
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
우

② (생략)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
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
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
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
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삭제

2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
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
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
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
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
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
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
한 경우

3.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
있는 경우) -----

-----.

2. -----
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,

3. (현행과 같음)

4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,000
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
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
자가 점유·소유한 건물로 점
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
따라 매각 하는 경우
가.·나. (생략)
5. (생략)

4. -----
----- 2012년 12
월 31일(「특정건축물 정리에
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
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. 이하
같다) -----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5. (현행과 같음)